

##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 기업행동규범

상장회사는 증권시장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써의 자각 아래 회사정보공개의 한층 더한 충실함에 의하여 투명성확보가 요구되는 것에 더하여 투자자보호 및 시장기능의 적절한 발휘 관점에서 적절한 기업행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기업행동규범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행동규범은 상장회사로써 최소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 상장회사에 대한 요청사항을 명시하여 노력의무를 과한 '바람직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표조치 등 실효성확보수단의 대상이 됩니다.

준수해야 하는 사항

- 제 3 자할당에 관한 준수사항
- 유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주식분할 등 금지
- MSCB 등의 발행에 관한 준수사항
- 서면에 따른 의결권행사 등의 의무
- 상장 외국회사의 의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환경정비에 관한 의무
- 이사회, 감사역회 또는 위원회, 회계감사인의 설치의무
- 독립임원의 확보의무
- 회계감사인의 감사증명 등을 행하는 공인회계사 등 선임의무
-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정비의 결정의무
- 매수방어책 도입에 관한 준수사항
- MBO 등의 공개에 관한 준수사항
- 지배주주와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한 준수사항
- 상장회사 감사사무소 등에 의한 감사
- 내부자거래 금지

-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 유통시장의 기능 또는 주주의 권리 훼손행위 금지

### 바람직한 사항(노력의무)

- 바람직한 투자단위 수준 이행 및 유지
-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기 위한 환경정비
- 무의결권주식 주주 교부서류
- 내부자거래 미연방지에 대한 체제정비
- 반사회적 세력 배제에 대한 체제정비 등
- 상장회사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원칙의 존중
- 회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정확한 대응체제 정비

[출처: [일본증권거래소그룹\(JPX\) 홈페이지](#)]

##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기본원칙

###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에 대해서

본 코드에 있어 '코포레이트 거버넌스'는 회사가 주주를 비롯하여 고객·종업원·지역사회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투명·공정하고 신속·과단(果斷)한 의사결정을 행하기 위한 구조를 의미합니다.

본 코드는 실효적인 코포레이트 거버넌스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주요한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적절히 실천되는 것은 각각의 회사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한 자율적 대응이 도모되는 것을 통하여 회사, 투자자, 나아가서는 경제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주의 권리·평등성의 확보】**

1. 상장회사는 주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과 함께 주주가 그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회사는 주주의 실질적인 평등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수주주나 외국인주주에 대해서는 주주 권리의 실질적인 확보, 권리행사에 관한 환경과 실질적인 평등성의 확보에 과제와 우려가 발생하기 쉬운 면이 있으므로 충분히 배려를 해야 한다.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하고의 적절한 협동】**

2. 상장회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창출은 종업원, 고객, 거래처, 채권자, 지역사회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원(resource) 제공과 공헌의 결과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러한 이해관계자하고 적절한 협동에 노력을 해야 한다.

이사회·경영진은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입장과 건전한 사업활동 윤리를 존중하는 기업문화·풍토의 구성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적절한 정보공개 및 투명성 확보】**

3. 상장회사는 회사의 재정상태·경영성적 등 재정정보, 경영전략·경영과제, 리스크, 거버넌스에 관한 정보 등의 비재무정보에 대해 법령에 의거한 공개를 적절히 행하는 것과 함께 법령에 의거한 공개 이외의 정보 제공에도 주체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 때에 이사회는 공개·제공되는 정보가 주주하고의 사이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행할 때에 기반이 되는 것에도 근거하여 이러한 정보(특히 비재무정보)가 정확하고 이용자에게도 이해하기 쉬우며 정보로서의 유용성이 높은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이사회 등의 책무】

4. 상장회사 이사회는 주주에 대한 수탁자책임·설명책임을 근거하여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추구하고 수익력·자본효율성 등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 (1) 기업전략 등 큰 방향성을 제시할 것
  - (2) 경영진 간부에 의한 적절한 리스크테이크를 지원하는 환경정비를 행할 것
  - (3) 독립된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집행역 및 소위 집행임원을 포함)·이사에 대해 실효성이 높은 감독을 행할 것

이러한 역할·책무는 감사역회설치회사(그 역할·책무의 일부는 감사역 및 감사역회에서 맡는 것으로 한다),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감사등 위원회 설치회사 등 어느 쪽의 기관설계를 채용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절히 다해야 한다.

## 【주주하고의 대화】

5. 상장회사는 그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장 이외에서도 주주하고의 사이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행한다.

경영진 간부·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주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관심·우려에 정당한 관심을 주는 것과 함께 스스로 경영방침을 주주에게 이해하기 쉬운 모양으로 설명하여 그 이해를 돕는 노력을 행하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관한 균형을 가진 이해와 그러한 이해를 근거한 적절한 대응에 노력을 해야 한다.

[출처: 일본증권거래소그룹(JPX) 홈페이지]